

2026년 담양군의회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

담양군의회에서는 쾌적한 청사관리 및 의정활동의 원활한 홍보·지원업무를 추진할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고자 공개 모집하오니 성실하고 역량 있는 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2025. 12. 22.

담양군의회의회장

1 모집개요

- 공고기간 : 2025. 12. 22.(월) ~ 12. 29.(월)(7일간)
- 접수기간 : 2025. 12. 23.(화) ~ 12. 29.(월)(4일간)
 - ※ 접수시간 : 평일 09:00~18:00[점심시간(12:00~13:00), 토·일·공휴일 제외]
- 채용인원 : 2명
- 채용분야 및 내용

채용구분	채용분야	채용인원	직무내용	근무처
기간제 근로자	계	2명		담양군의회 의회사무과
	청사 관리 (청소원)	1명	· 담양군의회 청사 청소 및 주변 환경정비 등	
	사진 촬영기사	1명	· 의정활동 사진 촬영 · 기타 부서장이 부여한 업무 등	

※ “기간제근로자”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함

2

응시자격

- 응시연령 : 18세 이상(채용예정일이 속한 연도 기준)
- 성 별 : 제한없음(단, 남성인 경우 병역의무 완료 또는 면제된 자)
- 자격요건 : 상시 근무가 가능하고 신체 건강한 사람
 - ※ 업무시간 중 겸직 불가
- 우대사항
 - 공고일 이전부터 당해시험 최종시험일(면접시험 최종일)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담양군으로 되어있는 자로서 동 기간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
 - 채용(지원)분야 경험이 풍부한 자
 - ※ 「담양군의회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」 제22조제3항에 의거, 동점자 발생시 해당자 우대
- 가점사항

사회 형평 가점	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조에 의한 장애인	각 전형 단 계 별 만 점 의 3%
	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	
	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	
	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호대상자	

※ 「담양군의회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」에 의거, 법정가점은 채용분야의 채용예정인원이 4명 미만으로 미적용

-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
 1. 「담양군의회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」 제25조의 채용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, 기타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
 2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라 신규 채용 시 채용후보자가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
 3. 기타 관련 법령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

담양군의회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

제22조(채용시험 가점 및 동점자 처리기준)

-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, 동점자 처리기준은 해당 근로자 채용계획에 따른다.
- ④ 채용권자는 채용공고상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반영하여 응시자에게 안내해야 한다.

제25조(결격사유) ① 근로자의 채용 결격사유에 관해서는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를 따른다.

- ② 채용권자는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라 신규 채용 시 채용 후보자가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되는지 별지 제3호서식의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(확인서)를 징구하고 확인해야 한다.
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

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2.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)

지방공무원법

제31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

예시 :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56조(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),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9조의3(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)

3

근로조건

- 계약기간 : 2026. 1. ~ 12.
- 근무일수 및 시간 : 주 5일 / 1일 8시간 근무[평일 09:00~18:00]
 - ※ 근로여건 및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, 근로일 등은 변경될 수 있음
- 신분 : 기간제근로자로 “근로기준법” 과 “근로계약” 에 의한 근로자
- 기준단가 : 2026년 최저임금(시급 10,320원)
 - 청사관리(청소원) : 82,560원/일
 - 사진 촬영 기사 : 92,880원/일
 - ※ 4대 보험(국민연금, 건강보험, 산재고용보험) 의무 가입 및 본인 부담금 공제 후 지급
 - ※ 사진 촬영 기사는 주로 현장 근무로 타 분야 채용자와 급여의 차이를 둠.
- 후생복지 : 4대보험 가입(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)

4

채용방법

- 1차 시험 : 서류전형
 - 응시자격 등에 대한 적격여부 서면 심사
 - 응시인원이 채용인원보다 많은 때에는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
- 2차 시험 : 면접시험(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)
 -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 대면 심사
 - ① 기간제 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
 -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 · 품행 및 성실성
 - ⑤ 창의력 ·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
 - 합격자 결정 : 면접시험 결과 평균 60점 이상인 자 중 최고득점자
 - ※ 단,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점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“하”로 평정한 경우와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를 “하”로 평정한 경우에는 평균점수와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됨.

5

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

○ 원서 교부

- 담양군의회 홈페이지(<http://dycouncil.go.kr>) “고시공고”란의 공고문에 첨부된 응시원서 서식(응시원서, 지원신청서 등)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

○ 원서 접수

- 접수기간 : 2025. 12. 23.(화) ~ 12. 29.(월) / 4일간
- 접수방법 : 근무시간(09:00~18:00) 내 본인 방문접수
 - 평일 09:00~18:00(점심시간 12:00~13:00 제외) 중에 접수하며, 토·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불가
 - 응시원서는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, 다른 채용분야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음
- ※ 인터넷 또는 우편, 대리접수 불가
- 접 수 처 : 담양군의회 의회사무과 의정팀(☎061-380-3514)

6

채용절차 및 일정

구 분	일 정	장 소
채 용 공 고	2025. 12. 22.(월) ~ 12. 29.(월)	담양군의회 홈페이지
응 시 원 서 접 수	2025. 12. 23.(화) ~ 12. 29.(월)	방문접수(담양군의회 의회사무과)
1차(서류)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장소 공지	2025. 12. 31.	담양군의회 홈페이지
2 차 면 접 시 험	2026. 1. 5.	담양군의회
최 종 합 격 자 발 표	2026. 1. 7.	담양군의회 홈페이지 및 개별 통지

※ 채용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 및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임.

7

제출서류

-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 1부
- 응시원서(서식 1) 1부
- 지원신청서(서식 2) 1부
 - 경력 및 자격사항을 기재하였더라고 경력증명서, 자격증 사본 제출 등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
- 자기소개서(서식 3) 1부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동의서(서식 4) 1부
 - 반드시 성명, 서명은 자필로 작성
-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(서식 5) 1부
- 공정채용 확인서(서식 6) 1부
-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(서식 7) 1부
- 주민등록초본 1부(주소 이력 및 병역사항 포함)
 -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
-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1부(해당자에 한함)
- 가점 증빙서류 각1부(해당자에 한함)
- ※ 서류 제출시 유의사항
 - 지원신청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,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
 - 근무기간, 직위,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(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)하고,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
 -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,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(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)내의 서류이어야 함.

8

응시자 유의사항

- 응시자는 동일 원서 접수기간 내 다른 응시분야와 중복 접수할 수 없으며, 중복 응시하게 되는 경우 서류전형 심사 시, 부적격자로 간주되어 불합격처리 됩니다.

-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 서식은 담양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문의 서식을 출력하여 작성하시기 바라며, 공고문에 포함된 지정서식으로 작성하지 않을 경우 결격 처리됩니다.
-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의 적합여부를 우선 판단하여 서류를 접수하시기 바라며, 서류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,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.
-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한 경우 반환 가능하나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반환 가능하며,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채용을 무효로 합니다.
- 자격요건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, 확인이 불분명한 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.
 - ※ 경력증명서, 자격증 사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, 자격사항은 미인정
- 서류에 기재된 내용(학력, 경력 등)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채용을 무효로 합니다.
-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통지 후 신원조사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.
-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(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)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합니다.
 - ※ 상기 사유로 재공고시 당초 응시자는 기재출 서류로 같음.
- 부정한 목적으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·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하게 됩니다.
- 응시인원이 많더라도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.
- 최종 합격자가 채용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거나 근로계약 체결포기,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중도 근로계약 해지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중에서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.

-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, 신체·정신상의 문제 등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담양군의회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 또는 개별 연락합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의회 의회사무과 의정팀(☎ 061-380-3514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9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

-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(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)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라 반환합니다.
- 담양군의회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한 달 동안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담양군의회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.
-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(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호 서식」)를 작성하여 담당자와 통화 후(☎ 061-380-3514) 팩스 또는 메일로 제출하시거나, 직접 방문 제출하시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리거나 또는 방문 시 직접 교부해드립니다.
- 담양군의회는 응시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,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할 예정입니다.